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8일 04시 57분



목차

목차	2
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	3
선천성대사이상 지원 및 환아관리	3
검사비(선별 및 확진)지원	3
구비서류	3
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등 지원	3
구비서류	4

신생아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	영양제 정장제 지원	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
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	기저귀 조제분유 지원	영유아 건강검진
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		

선천성대사이상 지원 및 환아관리

🔗 검사비(선별 및 확진)지원

- 대상 :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여수시인 신생아
- 검사항목 : 페닐케톤뇨증, 갑상선기능저하증, 갈락토스혈증, 호모시스틴뇨증, 단풍당뇨증, 선천성부신과형성증 포함한 텐덤 패스(50여종)
- 지원내용 :
 - >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(일부)본인부담금 지원
 - ※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 검사
- 신청기간 : 출생일 기준 1년 이내

🔗 구비서류

- 1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신청서(보건소방문 작성)
- 2 주민등록등본(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, 가구원이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)
- 3 건강보험증 사본(의료급여증)
-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 - > ※ ②의 경우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(가족관계증명 제외)
- 5 신분증
- 6 검사비 영수증 및 검사(진료)내역서
- 7 통장사본
- 8 의사진단서(확진검사비 신청시)

🔗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등 지원

- 대상 : 2차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 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, 신청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환아
- 지원내용

- >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자 의료비 지원 : 검사비, 약제비 250,000원/년 범위 내 지원
- > 페닐케톤뇨증, 단풍시럽뇨병, 요소회로대사질환, 호모시스틴뇨증, 갈락토스혈증 등 환자:특수조제분유, 저단백 헛반 지원
- > 단장중후군, 담도폐쇄증, 장림프관확장증 환자 : 특수조제분유필요량의 50%지원
- > 크론병 환자 : 최초 신청시 집중치료기간(8주) 동안 월간 필요량의 100%지원, 이후 1일 1포 지원(진료확인서 제출 필요)

구비서류

구분		제출 서류
특수식이 지원	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질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최초신청) 진단서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> 진단서에 분유명, 필요량(1일 또는 월간)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,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② (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)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> 예)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,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발생 > 품목·분유 단계·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
	크론병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최초 신청, 재발) 진단서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> 진단서에 분유명, 필요량(1일 또는 월간)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, 해당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>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1포 초과 지원 필요시 필요량,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> 유전병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,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(또는 진단서)를 제출하여야 함 ② (추가신청) 진료확인서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>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가능(필요량,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/진 단서로 대체 가능) >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, 환자 기본정보와 1일1포 특수 조제분유 필요 개월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
의료비 지원	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최초 신청)진단서 1부 ② 진료비(약제비 포함)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> * 약제비 청구시 처방전 첨부/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수증만 유효 ③ (최초 신청, 변경사항 발생)통장사본
권통	주민등록등본, 신분증 *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	

Yeosu Web Contents

